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 임실군의회 의장

#### 1. 개정이유

임실군 아동·여성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여 아동·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아동·여성보호에서 아동·여성안전으로 제명 변경
- 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목적 규정 (안 제6조)
- 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기능 (안 제7조)
- 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구성 (안 제8조)
- 마. 아동·여성안전 실무사례협의회 구성 및 업무 (안 제13~14조)
- 바. 아동·여성안전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수당 (안 제1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1)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결과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그 밖의 사항

- 1) 현행조문
- 2) 입법예고(2015.7.17 ~ 2015.8. 5)결과 : 특이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붙임)
- 4) 관련법 발체문 : 붙임

##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명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를 “임실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로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실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장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임실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아동·여성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 구축
2. 민관협력·연계와 자원 및 정보교류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고
7. 지역 내 아동·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지원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장 구성 및 기능

**제8조(지역연대운영위원회 구성)** ①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고,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2. 경찰 또는 사법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5. 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6.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7. 지역주민대표

8. 그 밖의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8조 제3항의 각 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한다.

**제14조(실무사례협의회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제4장 아동·여성안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당)**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에 참석한 자에게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 제정) 2009.12.31 조례 제190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여 임실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

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실군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폭력 업무관련 임실교육청 관계자
2.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 업무 관계자
3.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3장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4.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서성석

##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5A전북임실042			
정책명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구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주민생활복지과		
	담당자명	박경숙	전화번호	063-640-2123
담당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주민생활복지과		
	담당자명	박경숙	전화번호	063-640-2123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5년 07월 22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5년 07월 27일			

해당 과제는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08월 04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

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